

발송번호: 9-5-2022-051151924

발송일자: 2022.07.09.

제출기일: 2022.09.09.

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

출 원 인 성 명 주식회사 디케이엠씨코리아 (특허고객번호: 120210226834)

주 소

대 리 인 성 명

주 소

출 원 번 호 40-2021-0062828

상 품 류 제 10 류

1.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(관계법령 :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,

의견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,

보정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
2.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,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(연장)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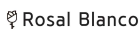

거 절 이 유

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.

1.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(답변, 소명)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상표견본이미지

본 출원	인용
제4020210062828호	제1641545호
	

(※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[거절이유] 상표법 제35조 제1항(또는 동법 제34조 제1항 제7호)

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출원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(또는 동일)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출원 상표가 최종 설정등록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아래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(법 제41조) 분할하여 출원(법 제45조)하는 경우, 또는 해당 선출원상표가 거절결정, 출원취하, 출원포기 또는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○ 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출원상표 제1641545호(BLANCO)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지정상품 : [유사군 코드 G110101] 성형외과용 의료기기, 약제용 주사기, 의료용 매선침, 의료용 필터기기, 일회용 주사기, 캐놀래, 피부치료용 의료기기, [유사군 코드 G110101, G110102] 의료기기. 끝.

2022.07.09.

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

심사관 이종열 _____

1.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타인의 선출원·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·유사 여부는 유사상품 심사기준(특허청 예규)을 참고하여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.

2. 타인의 선출원·선등록 상표의 상세한 내용은 「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(<http://www.kipris.or.kr/>)」에서 무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☎1544-8080로, 이 통지서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☎042-481-5311(담당심사관 이종열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특허로(www.patent.go.kr) 또는 특허청(www.kipo.go.kr)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심사 진행상황, 서류 제출 및 절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(특허청)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4동 (문산동, 정부대전청사)